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및 제9조).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있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공사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 신청, 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II. 검토의견

1. 전력망위원회의 위촉위원 관련 검토(안 제9조제1항)

- 제정안 제9조제1항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전력망위원회”)를 위원장 1명(국무총리)을 포함한 35명 내외의 당연직위원·위촉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당연직위원이 되는 자는 안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위촉위원의 경우 안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에너지·자원 등 전문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추천하는 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그 자격 및 추천절차만 명시하고, 위촉의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방위사업법」 제9조제4항제5·6호¹⁾ 등 국회 상임위원회 추천 인사의 위원 위촉과 관련된 입법례를 고려하여 안 제9조제1항제2호의 전력망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위촉의 주체를 위원장인 국무총리로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1) 「방위사업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44호, 2025. 1. 7., 타법개정]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5.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 정 안	검 토 의 건
제9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략)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재해, 환경·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기술, 첨단미래산업,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u>추천하는</u> 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u>추천하는</u> 3명으로 구성	제9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정안과 같음)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재해, 환경·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기술, 첨단미래산업,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u>위촉하는</u> 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u>추천하고</u> 국무총리가 <u>위촉하는</u> 3명

2. 인·허가의제 관련 제출 서류 관련 검토(안 제11조제2항제3호)

- 제정안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안 제13조제1항에 따른 35개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안 제11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안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13조제2항에서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인·허가 의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제5항²⁾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³⁾은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2) 제정안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안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안 제13조제2항·제5항과의 관계에서 중복된 규율로 보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정비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② (생략) 1. · 2. (생략) 3. <u>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인허가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u> 4. ~ 6. (생략)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② (제정안과 같음) 1. · 2. (제정안과 같음) <u><삭제></u> 3. ~ 5. (제정안과 같음)

3. 입지선정 특례 관련 검토(안 제14조)

- 제정안 제14조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 등을 고려할 때

3) 「행정기본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6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보다 명확한 규율을 위해 인용조문의 정비 및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14조제1항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조의3제2항⁴⁾에서 정하는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용조문을 이러한 내용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14조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 등의 사유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른 기간 내에 입지선정이 곤란해진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4조제1항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과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므로 안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유 보고를 필요로 하는 입지선정 지체기간의 기준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른 기간에서 제정안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심의·의결기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2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5조의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②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각 호 생략)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 12. 3.] [대통령령 제35041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18조의7(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③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지선정위원회의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 정 안	검 토 의 건
제14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 선정에 관한 특례) ① 「<u>전원개발촉진법</u>」 제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u>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② 개발사업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전원개발촉진법</u>」 제5조의3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③ (생략) ④ 사업시행자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의 사유로 「<u>전원개발촉진법</u>」 제5조의3에 따른 기간 내에 입지선정이 곤란 또는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보고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조정 중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 선정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u>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간을 같은 법 제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u> ② 개발사업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전원개발촉진법</u>」 제5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사업시행자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의 사유로 <u>제1항에 따라 정한 심의·의결 기간</u> 내에 입지선정이 곤란 또는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보고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조정 중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벌칙 규정 관련 검토(안 제32조)

- 제정안 제32조제1항은 미공개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안 제26조⁵⁾를 위반하여 개발사업 등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등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의 규모에 따라 각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익 등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익 등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사 입법례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⁶⁾와 같은 방식의

5) 제정안

제26조(보안관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
2. 제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제9조에 따른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4. 제11조에 따라 협의하는 관계 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54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규율로 이해되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32조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각 호로 나누어 법정형의 형량을 가중하고 있으나, 유사 입법례의 태도 및 법제실무상 높은 법정형을 먼저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32조제2항 각 호의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32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 벌금을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2조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은 안 제32조제1항에 따르지만 형벌의 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벌금형 병과 대상 적용범조를 같은 조 제1항·제2항으로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제32조(벌칙)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	제32조(벌칙) ① (제정안과 같음)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 정 안	검 토 의 건
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u>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u> 2. <u>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u> ③ 제1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아는 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u>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u> 2. <u>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5. 그 밖의 사항에 대한 검토

- 제정안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안 제24조제1항제1호)와 같이 의미 이해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법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서 인용조문을 적시하여 정의⁷⁾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계 부처 의견

- 제정안 제24조제1항은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한국전력공사)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 지원,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복리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안 제25조는 국가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⁸⁾.

7) 제정안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지중이설의 대상이 되는 가공전선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송전, 배전설비를 의미함에도, 제정안에서는 별도로 이를 정의하고 있지 않음.

「전기사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6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각 목 생략)

8) 제정안

제24조(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
3.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지원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

-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이 전력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직접비용 및 부대비용(재정적 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개발되는 전력망을 이용하여 전력을 판매하는 수익 획득 주체인 사업시행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제 정 안	기획재정부 수정의견
제24조(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① <u>국가 또는 사업시행자</u> 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24조(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① <u>사업시행자</u> 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u> 는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전문위원 이 은 정)

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